

2026학년도 1학기

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[희망사다리1유형] 선발 평가

*재단 추천기준을 준수하여 작성하였음



- 한국장학재단 **배정인원에 따라 추천**
- 본 기준은 대학에서 **장학생 추천 시 우선 순위를 산정하는 대학 자체 기준이며(학업성적 및 취·창업 준비계획, 가산점 배점은 한국장학재단 가이드라인에 따름)**
- 한국장학재단의 **장학생 추천기준 및 업무 처리기준이 변경 될 경우 해당 내용을 우선 적용**

☑ 목차페이지

01

취업지원형

4 Page

02

창업지원형

10 Page

❖ 취업지원형



선발 대상

[재단 추천기준을 준수하여 작성]

- ①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한 학생
- ② 3학년 이상 재학생, 직전학기 성적 70점(백분위) 이상인 자
- ③ 중소·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취업자

✓ 선발 평가항목 및 배점표(취업지원형)

학업성적(50점) + 중소기업 취업·창업의지(50점) + @가산점(10점) = 100점+@

학업 성적	백분위 점수 (50점)	100점~97점	92점~90점	96점~93점	89점~87점	86점~83점	80점 미만	82점~80점
		50	46	48	44	42	30	40
중소기업 취·창업 의지	취업·창업 준비계획 (20점)	-취·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제출 여부 및 사용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평가 -상(20점~16점), 중(15점~11점), 하(10점~6점)						
	유관사업 참여자 (10점)	-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및 기술사관육성사업(중소기업진흥공단) - 대학 현장실습 및 중소기업탐방 등 참여자(고용노동부) - 교외근로(중소기업 근무)장학생(한국장학재단) * 사업당 5점을 부과하며 최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						
	대학별도기준 (20점)	-토익성적 500점 이상 취득 성적표(10점) -진로취업지원센터·대학일자리본부 운영 비교과 프로그램(Self-Mapping Day 포함) 2시간 이상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(5점/개당) * 동일 프로그램 다회차 참여 1건 인정 * 상담 및 2시간 이내 운영 프로그램(박람회, 설명회 등)은 미인정 ※ 신청학기(2026-1) 및 직전학기(2025-2) 기간내 이수한 증빙 자료만 인정 (토익,비교과프로그램) -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취득 자격증 사본 기사,산업기사(10점/개당) 기능사(5점/개당) ※ 재학기간 동안 취득한 자격증 사본 증빙						
저소득층 우대	가산점 (10점)	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 (2026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참조) ※ 신청서류 장학생 본의 명의로 발급한 증빙자료만 인정 ※ 증빙자료 발급일은 1학기는 신청연도 1월 1일 이후, 2학기는 신청연도 7월 1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※ 장학금 신청기간 마감일 이후에는 저소득층으로 인정 불가						

✓ 평가 내용

① 취.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평가

- 평가항목 : 계획의 구체성(10점), 실현 가능성(10점)
- 평가점수 : 최대 20점이며,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합계를 평균값으로 산출
- ※ 취업.창업 지원금 사용계획서는 장학금 신청시 한국장학재단에 기제출

② 유관사업 참여 실적

- 2)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및 기술사관육성사업(중소기업진흥공단), 대학생 현장실습 및 중소기업탐방 등 참여자(고용노동부), 교외근로(중소기업 근무)장학생, 취업캠프, 취업박람회 등 참여 증빙자료
- 대학생 현장실습 주수별 차등배점: 10주 이상(10점), 8주 이상(8점), 4주 이상(6점), 4주 미만(4점)
- ※ 동일 활동에 대해 중복인정 불가하며, 항목당 최대 배점을 초과하지 못함
- ※ 모든 항목은 본인참여 여부 및 일자 등 사실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(주관기관 발급 등) 제출 기한내 도착분에 한함

평가 내용

4 저소득층 우대사항 가산점 지급

구분	자격명	증빙자료
기초생활수급자	생계급여수급자	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생계/의료) *보장시설 수급자 포함
	의료급여수급자	
차상위계층 *장학금 신청기간 마감일 이후에는 저소득층으로 인정 불가하며 발급일은 '26년 1월1일 이후만 인정 (장학생 본인 명의로 발급한 증빙자료만 인정)	주거급여수급자	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주거/교육)
	교육급여수급자	
	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	한부모가족증명서
	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	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
	차상위장애수당/장애아동수당대상자	(경증)장애수당,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
	차상위자활대상자	자활근로자 확인서
	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	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
	차상위 계층 대상자	차상위 계층 확인서

*장학금 신청기간 마감일 이후에는 저소득층으로 인정 불가하며 발급일은 '26년 1월1일 이후만 인정
(장학생 본인 명의로 발급한 증빙자료만 인정)

● 동점자 처리 기준

- 1)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높은 자
- 2) 전체학기 평점평균이 높은자
- 3) 전체학기 이수학점이 많은 자
- 4) 졸업학기(마지막학기)인 자

※ 포기자 발생 시 후보자 중 차순위자 순으로 추천

● 기타사항

- 한국장학재단 배정인원에 따라 추천
- 본 기준은 대학에서 장학생 추천 시 우선 순위를 산정하는 대학 자체 기준이며(학업성적 및 취·창업 준비계획, 가산점 배점은 한국장학재단 가이드라인에 따름), 한국장학재단의 장학생 추천기준 및 업무처리기준이 변경 될 경우 해당 내용을 우선 적용

◆ 제출서류(제출 시 대학추천 가점 사항)

- ✓ 공통(한국장학재단 시스템 제출) : 취·창업 준비계획서 1부

*취·창업 준비계획서 미제출자는 지원자격 없음

- ✓ 유관사업 참여자: 유관사업 참여 관련 증빙서류(해당학생)

- ✓ 토익성적표, 비교과프로그램(진로취업지원센터, 대학일자리본부) 이수증(해당학생)

- ✓ 성적증명서(전체학기)

- ✓ 저소득층 증빙자료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학생)

*제출기한 내 도착한 자료만 인정

☑ 창업지원형



선발 대상

[재단 추천기준을 준수하여 작성]

- ①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한 학생
- ② 3학년 이상 재학생, 직전학기 성적 70점(백분위) 이상인 자
- ③ 창업희망자 또는 취업자

✓ 선발 평가항목 및 배점표(창업지원형)

학업성적(50점) + 중소기업 취업·창업의지(50점) + @가산점(10점) = 100점+@

학업 성적	백분위 점수 (50점)	100점~97점	92점~90점	96점~93점	89점~87점	86점~83점	80점 미만	82점~80점
		50	46	48	44	42	30	40
중소기업 취·창업 의지	취업·창업 준비계획 (20점)	-취·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제출 여부 및 사용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평가 -상(20점~16점), 중(15점~11점), 하(10점~6점)						
	창업강의 이수 실적 (10점)	- 창업 강의 및 실습 이수자 -이수가능 기관 : 우리대학 창업 교과목, HRD-net, 한국산업인력공단 ※ 개인 인강 캡처본 인정 불가 -이수 건수 당 5점을 부여하며 최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						
	대학별도기준 (20점)	-청년/기술 창업자(10점) -창업경진대회 입상(10점/개당) -창업관련 2시간 이상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(5점/개당) * 상담 및 2시간 이내 운영 프로그램은 미인정						
저소득층 우대	가산점 (10점)	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 (2026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참조) ※ 신청서류 장학생 본의 명의로 발급한 증빙자료만 인정 ※ 증빙자료 발급일은 1학기는 신청연도 1월 1일 이후, 2학기는 신청연도 7월 1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※ 장학금 신청기간 마감일 이후에는 저소득층으로 인정 불가						

✓ 평가 내용

① 취.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평가

- 평가항목 : 계획의 구체성(10점), 실현 가능성(10점)
- 평가위원 : 2인(학생취업처장, 진로취업지원센터장)
- 평가점수 : 최대 20점이며,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합계를 평균값으로 산출
- ※ 취업.창업 지원금 사용계획서는 장학금 신청시 한국장학재단에 기제출

② 창업관련 이수실적

- 창업 관련 직업 교육 이수 1건당 5점(이수증명서 제출자에 한함)
- 이수가능 기관 : 우리대학 창업 교과목, HRD-net, 한국산업인력공단
- ※ 개인 인강 캡처본 인정 불가
- 이수 건수 당 5점을 부여하며 최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
- ※ 동일 활동에 대해 중복인정 불가하며, 항목당 최대 배점을 초과하지 못함
- ※ 모든 항목은 본인참여 여부 및 일자 등 사실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(주관기관 발급 등) 제출 기한내 도착분에 한함

✓ 평가 내용

4 저소득층 우대사항 가산점 지급

구분	자격명	증빙자료
기초생활수급자	생계급여수급자	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생계/의료) *보장시설 수급자 포함
	의료급여수급자	
차상위계층 *장학금 신청기간 마감일 이후에는 저소득층으로 인정 불가하며 발급일은 '26년 1월1일 이후만 인정 (장학생 본인 명의로 발급한 증빙자료만 인정)	주거급여수급자	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주거/교육)
	교육급여수급자	
	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	한부모가족증명서
	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	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
	차상위장애수당/장애아동수당대상자	(경증)장애수당,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
	차상위자활대상자	자활근로자 확인서
	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	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
	차상위 계층 대상자	차상위 계층 확인서

*장학금 신청기간 마감일 이후에는 저소득층으로 인정 불가하며 발급일은 '26년 1월1일 이후만 인정
(장학생 본인 명의로 발급한 증빙자료만 인정)

◀ 동점자 처리 기준

- 1)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높은 자
- 2) 전체학기 평점평균이 높은자
- 3) 전체학기 이수학점이 많은 자
- 4) 졸업학기(마지막학기)인 자

※ 포기자 발생 시 후보자 중 차순위자 순으로 추천

● 기타사항

- 한국장학재단 배정인원에 따라 추천
- 본 기준은 대학에서 장학생 추천 시 우선 순위를 산정하는 대학 자체 기준이며(학업성적 및 취창업 준비계획, 가산점 배점은 한국장학재단 가이드라인에 따름), 한국장학재단의 장학생 추천기준 및 업무처리기준이 변경 될 경우 해당 내용을 우선 적용

☛ 제출서류(제출 시 대학추천 가점 사항)

- ✓ 공통(한국장학재단 시스템 제출) : 취·창업 준비계획서 1부

*취·창업 준비계획서 미제출자는 지원자격 없음

- ✓ 유관사업 참여자: **유관사업 참여** 관련 증빙서류(해당학생)

- ✓ **토익성적표, 비교과프로그램**(진로취업지원센터,대학일자리본부) 이수증(해당학생)

- ✓ 성적증명서(전체학기)

- ✓ 저소득층 증빙자료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학생)

***제출기한 내 도착한 자료만 인정**



감사합니다.